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공존사용등록 [상표]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 상표의 병존에 의해 혼동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에 병존하는 상표를 등록해주는 것. 미국 상표법 15 U.S.C. § 1052에 근거함.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적법하게 존재하고 그 상표의 등록 전에 타인이 상표권자의 영업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발생.

## 공존 사용 절차 [상표]

상표출원인이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한 자신의 상표를 미국 내에서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상표의 등록을 해줄 것을 미국 TTAB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에 신청하는 결정계 절차. 상표출원인은 자신의 상표 사용으로 인해 혼동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 공정이용 [저작권]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국내에서는 2007년 저작권법 개정안에 일반조항을 삽입하는 안이 제출되어 있음.

## 공인번역 [지재권 일반]

특허청 등에 제출할 문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국의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해당 문건이 공인된 기관 내지 전문가를 통해 번역한 것. 이러한 공인번역은 공증인에 의해 공증을 받음.

## 공유 [법일반]

2인 이상이 하나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물건을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 공유관계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수인이 공동으로 한 개의 물건을 양수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임. 민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민법 제215조), 무주물 선점(민법 제252조), 매장물발견(민법 제254조), 침부(민법 제257조), 공동상속재산(민법 제1006조) 등이 그 예임. 지재권의 경우 계약 또는 지재권의 양도에 의해 공유의 소유형태가 나타남.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